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6. 3. 11 ————— 사하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1996. 3. 12

다. 상 정 일 자 : 제4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96. 3. 22)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최범립 구세계장)

가. 제안이유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 면제범위 확대와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을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범위에 넣고,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과 재단법인 제2회 부산 동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및 재단법인 제14회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대하여 향후 경기대회 관련사업의 준비와 운영의 효율적인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 등 조례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국가유공자 3 - 5급 상이자 일부에 대해서도 면허세를 면제함(안 제2조 제2항)
-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의 경감규정 신설
-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은 박물관 등과 같은 수준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함(안 제6조 제7호)
- 대한 주택공사 등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이 40㎡이하 영구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토세를 면제하던 것을 영구임대주택 단지의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복리시설용 부동산까지도 포함하도록 함(안 제14조 제2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개정법률에 대도시내 중과규정에서 부산시가 제외되어 존치필요가 없어 '제18조'를 삭제함

- '재단법인 제2회 부산 동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및 '재단법인 제14회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면제조항 신설(안 제18조의2 제1항)

- 각 조직위원회에 대하여는 면허세 및 사업소세의 면제조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지방세 감면대상 또는 감면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지방재정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으나 주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소의 재정수입이 감소 되더라도 사회경제적으로 보다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오히려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국가유공자가 본인명의로 등록하며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2,000cc이하 1대 한) 면허세 면제대상을 종전 상이등급 1,2급 전체와 3-5급중 일부만 포함되던 것을 1-5급 전체를 대상으로 수혜폭을 확대한 것은 이들의 국가와 민족을 위한 희생을 감안한다면 극히 당연하다고 보며,
- 과학기술문화 창달과 과학기술에 대한 범국민적 이해증진을 위해 제정된 과학관 육성법에 의거 등록된 과학관은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기 위한 사회교육시설로서 기존 지방세 면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과 같이 최소한 이들 시설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은 되어야 할 것이며,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노인복지법(제19조의 2, 제19조의 3 : '93. 12. 27 조항신설)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하는 것등, 사회교육시설 내지 노인복지시설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전용면적 40㎡이하 영구임대 주택용 부동산과 같이 영구임대 주택단지내의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복리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것은 영세민에 대한 간접적인 복지측면의 지원 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여겨지며,
-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인 '97년 동아시아 경기대회 및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는 국제대회로서 이 대회 유치로 인해 도시 기반 시설 등 사회간접 자본과 체육시설의 확충은 물론 부산지역의 발전을 엄청나게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임

이와 같이 중요한 두 경기대회 준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운영지원 등을 위해 이 대회준비와 직접관련된 부동산, 수익사업 등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것, 이들 양대 조직위원회에 대하여 이에 따른 면허세 및 사업소세 등 지방세를 면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이외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제84조의 2)과 관련 부산시가 공장설치시 중과대상 대도시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써 현행조례에 규정된(제18조) '부산광역시 공업지역 공장에 대한 감면'조항은 존치 필요가 없어져 삭제하는 것은 당연함.
- 상기 내용의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 본 개정조례(안)의 부칙에 명시된 조례 시행일과 적용시한에 대하여는
 - 시행일은 원칙적으로 소급이 안되며, 주민의 기득권 보호 등의 특히 필요한 경우에만 소급적용토록 제한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본 내용에 대하여도 반드시 '96. 1. 1일부터 소급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와
 - 적용시한의 경우 본 구세감면조례를 '97. 12. 31일까지만 적용한다면 '97년 동아시아 경기대회 및 2002년 아시아 경기대회 관련 감면규정을 제외한 구세감면 조례는 1998. 1. 1일부터는 사실상 폐지되고 감면제도가 없어지는지, 또는, 감면조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정비후 개정할 것인지, 또는 감면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각 개별근거 법령에서 감면등의 명문 조항이 마련되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